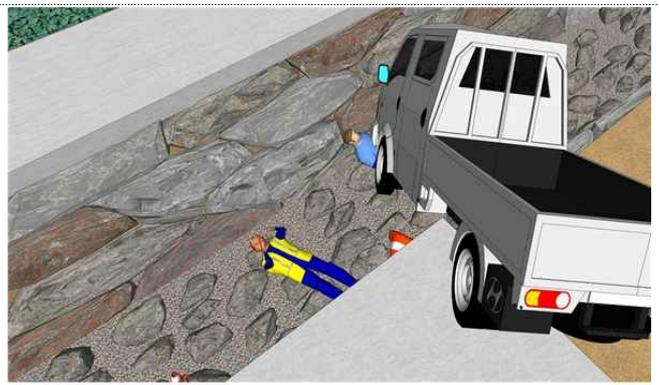




재해 개요

- 2021. 4. 22.(목) 16:50분경 경상남도 창원군 소재 0000건설공사 현장에서 석축 면 줄눈작업을 마치고 공사 중 발생한 시멘트 포대 등을 수거하기 위해 진입한 차량(1톤, 화물자동차)이 원인 미상의 사유를 정차하지 못하고 석축 상부에 서있던 작업자 2명을 충돌하여 차량과 함께 석축 아래로(1.8m) 떨어져 1명 사망, 1명 부상을 당한 재해임



①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 등을 옮기기 위해 석축 상부에서 대기하던 중

② 차량에 부딪혀 석축 아래로(h=1.8m) 떨어지며 석축면과 차량사이에 끼임



재해 발생 원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안전보건규칙 제38조)
 -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및 협착 등 재해예방을 위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별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폐기물 운반 작업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미반영함



재해 예방 대책

-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주지 교육
 -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폐기물 운반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및 협착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업 별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한 작업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 직영, 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